

#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정 2025. 04. 30. 규칙 제19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제 규정(규칙·지침 포함)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이란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주관부서’란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부패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의 담당부서로 지정받은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회계, 계약, 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  
2. 인사, 감사, 조사,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는 규정

3. 부패사건, 감사 및 수사사건, 상급기관 등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정부방침 및 정관 등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개정을 요하는 경우

2. 고객·국민생활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관리, 지원, 조직 설치 및 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서식 변경이나 조문 정리 및 자구 수정 등 그 개정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4조(평가기준)** 주관부서는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규정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체규정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

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규정의 제·개정을 제안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현행 규정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요청된 규정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통보 기한 만료일로부터 7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등 관련 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규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주관부서는 평가대상 규정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규정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소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소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규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자체적인 부패영향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9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2. 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자체적인 부패영향평가가 곤란한 경우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규정상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관련 법령이나 유관기관 규정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규정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사무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사무위탁·대행 등에 대하여 근거, 요건, 절차, 사무의 범위, 선정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 수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각종 행정 처리 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규정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규정 등의 근거 부재로 임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제4조 관련)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명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법령명)을 기재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형 식	정관, 규정, 세칙, 지침 등			
규정 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	평가대상 규정명			
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주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제·개정 일정(예정)	관계 부서 협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완료예정일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제·개정 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경우 기재			
별도 붙임자료	1. 제·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제9조 관련)

규정 명			
소관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세부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 별도 첨부	○ 개선(안) 수용 여부 - 규정 소관부서에 개선(안) 반영 여부를 추후 확인 기재	
○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경우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문서 통보)	

<평가결과 조치사항>

- 검토 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 동의” 문서를 통보.
- 소관부서는 세부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

## 세부평가서(제9조 관련)

■ 규정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